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5. 6. 20.(금) 10:00

##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 
자원에 관한 조례안  
(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725호
- 나. 제 출 자 : 장규권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9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## 2. 제안이유

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휠체어 경사로 규정 미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함에 따라 장애인·노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경사로 설치 지원, 종류 및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라. 경사로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.
- 마. 경사로 설치 및 정산, 비용의 반환을 규정함(안 제8조 및 제9조)
- 바. 협력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).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
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 
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

## 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애인 등의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1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2)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3) 경사로 설치 지원, 종류 및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4) 경사로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.
- 5) 경사로 설치 및 정산, 비용의 반환을 규정함(안 제8조 및 제9조)
- 6) 협력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).

다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에게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나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 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」가 운용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현행 조례와 지원 신청, 지원 사항 등의 내용이 유사함으로 같은 부서에서 조례 운용에 따른 실효성이 우려되므로 이에 따른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□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6. 29.] [법률 제19302호, 2023. 3. 28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 1. 19.>

1. “장애인등”이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,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편의시설”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,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.
3. “시설주”(施設主)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(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를 말한다.
6. “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”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,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.

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,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15. 1. 28.]

제7조(대상시설)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(이하 “대상시설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1. 공원
2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3. 공동주택
4. 통신시설
5.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·시설 및 그 부대시설

제13조(설치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## □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1. 28.] [법률 제18334호, 2021. 7. 27., 일부개정]

**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**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 
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 
있으며,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  
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 
기술적·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